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1 ~ 6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1 ~ 63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 ~ 64	거창군 가로수 관리·조성 조례안	13
2011 ~ 65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62
----------	-----------

제출연월일	2011. 10. 0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일반·지도(연구)직 복수정원은 규정에 적합하게 분류하는 등 우리 군의 정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 4급이상 1% 이내, 5급 6.4% 이내, 6급 28.2% 이내, 7급 31%이내, 8급 25% 이내, 9급 8.4% 이상
- 조정 : 4급이상 1% 이내, 5급 6.7% 이내, 6급 28.2% 이내, 7급 31%이내, 8급 25.3% 이내, 9급 7.8% 이상

나.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현행 : 6급 9% 이내, 7급 21% 이내, 8급 24% 이내, 9급 31% 이내 10급 15% 이상
- 조정 : 6급 9% 이내, 7급 21% 이내, 8급 21% 이내, 9급 49% 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5급 : 증 4명

- 현행 : 31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1명, 사업소4명, 읍1명, 면11명)
- 조정 : 35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4명, 읍1명, 면11명)

○ 일반직 6급이하 : 증 15명

- 현행 : 475명(본청214명, 의회5명, 직속기관62명, 사업소34명, 읍32명, 면128명)
- 조정 : 490명(본청220명, 의회5명, 직속기관69명, 사업소34명, 읍32명, 면130명)

○ 일반직+ 지도직 5급 상당 : 감 4명

- 현행 : 4명(직속기관4명)
- 조정 : 0명(직속기관0명)

- 일반직+ 지도직 6급 상당 : 감 15명
 - 현행 : 15명(직속기관15명)
 - 조정 : 0명(직속기관0명)
- 일반직+ 연구직 6급 상당이하 : 감 2명
 - 현행 : 2명(본청2명)
 - 조정 : 0명(본청0명)
- 연구직 : 증 2명
 - 현행 : 4명(본청0명, 직속기관3명, 사업소1명)
 - 조정 : 6명(본청2명, 직속기관3명, 사업소1명)
- 지도직 : 증 8명
 - 현행 : 17명(직속기관17명)
 - 조정 : 25명(직속기관25명)
- 기능직 : 감 8명
 - 현행 : 76명(본청38명, 의회6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7명)
 - 조정 : 68명(본청32명, 의회6명, 직속기관6명, 사업소15명, 읍4명, 면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09. 23 ~ 2011. 10. 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u>6.7% 이내</u>	28.2% 이내	31% 이내	<u>25.3%이내</u>	<u>7.8% 이상</u>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9% 이내	21% 이내	<u>21% 이내</u>	<u>49% 이상</u>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u>이상</u>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0%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45	270	14	124	60	64	54	37	146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529 (510)	234 (228)	8	75 (64)	27 (16)	48	38	33	141 (139)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31)	11	3	5 (1)	4 (0)	1	4	1	11
	6급 이하	490 (475)	220 (214)	5	69 (62)	23 (16)	46	34	32	130 (128)
일반직 + 지도직	소계	0 (19)			0 (19)	0 (19)				
	5급 상당	0 (4)			0 (4)	0 (4)				
	6급 상당	0 (15)			0 (15)	0 (15)				
일반직+ 연구직 (6급 상당 이하)		0 (2)	0 (2)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6	1		15		15			
연구직 (연구사)		6 (4)	2 (0)		3	3		1		
지도직 (지도사)		25 (17)			25 (17)	25 (17)				
기능직		68 (76)	32 (38)	6	6	5	1	15	4	5 (7)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63
----------	-----------

제출연월일	2011. 10. 0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과 부서 간 업무이동에 따라 위임 근거조문 및 주관부서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의 위임 근거법령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안 제3조·제4조)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다. 적용법령 및 주관부서 정비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안 별표)

○ 신설 위임사무(9건), 삭제 위임사무(1건), 근거법령정비(9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1. 8. 19. ~ 9. 0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p>
<p>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p>
<p>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p>	<p>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 따라 -----</p>

[별표]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24개 사무

연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소관부서	비고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주민생활 지원 실		
2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3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4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신청 및 발급, 현황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5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신청·접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6	읍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 정 과		
7	주민등록 업무 (단,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사항 제외,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외,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 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8	지방세 징수	지방세기본법 제6조		재 무 과	
9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6조			
10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6조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6조			
12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	지방세기본법 제6조			

13	<u>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u>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u>	재무과	
14	<u>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u>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제81조</u>		
15	<u>공유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u>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u>		
16	<u>불용품 처분 (읍면분, 정수물품 제외)</u>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u>		
17	<u>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사항 변경</u>	<u>자동차관리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부터 제110조까지</u>	건설교통과	
18	<u>이륜자동차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u>	<u>자동차관리법 제84조</u>		
19	광고물 등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u>	도시건축과	
20	광고물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9조까지</u>		
21	과태료 부과징수(신고대상 광고물)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u>		
22	<u>농지전용신고 수리처리</u>	<u>농지법 제35조</u>		
23	<u>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사후관리</u>	<u>농지법 제34조 및 제54조</u>	농업기술센터	
24	불법 농지전용 조사보고	<u>농지법 시행령 제58조</u>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64
----------	-----------

제출연월일	2011. 10. 0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된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가로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다 넓은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함

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목적 및 추진방향, 식재수종,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다. 가로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가로수관련 시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라. 가로수 수종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은행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마. 도로, 도로시설물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와 가로수업무 담당 부서와의 협의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등

바.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관리

사. 식재에 따른 비용부담 및 강제징수를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관련 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별지서식)

아. 관리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 작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1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0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 제2006-58호)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2011. 8.18. ~ 9.09.)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써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계획 등
7.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군의회 의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종의 선정) ① 군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배롱나무
3. 단풍나무
4. 산수유나무

5. 뱃나무 등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② 4차선으로 개설 및 확장된 국도와 지방도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재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11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구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1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2조·제15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제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디프제 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화기: 6월 상순 2화기: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사시 포플러류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가지 절단 소각 사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가지 절단 소각 만코지 수화제 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화기: 5월 초중순 2화기: 9월 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덩어리 채취 소각 디프제 살포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관살포: 5월 하순 ~6월 초순 나무주사: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디프제 살포 	4월 중하순
응애류	벗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나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까지벌레류	벗나무 소나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트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발생초기(수시)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p>△ 피해 발생의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p>△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식재·이식을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군수의 지시에 위반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나. 군수가 식재·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식재·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 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p>「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거 창 군 수 귀 하</p>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p>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65
----------	-----------

제출연월일	2011. 10. 0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군의회의 주문사항과 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하고, 환경부 고시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군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로 함

나. 피해농업인의 용어 개정(안 제2조제5호)

- 피해농업인을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에서
⇒ “군 내에서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한 농업인”으로 변경
- ※ 도 권고사항 반영

다. 농작물·인명피해 보상요건을 통합하고 완화함(안 제3조)

- 피해 보상요건을 완화함
 - 최저 피해면적 기준 : 330제곱미터 이상 ⇒ 삭제
 - 최저 피해금액 기준 : 30만원 이상 ⇒ 삭제
- ※ 군의회 주문사항 반영 및 도 권고사항 반영

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9조제4항)

- 농작물 피해 : 최대 500만원
- 피해보상액 산정 곤란시 피해보상액 조정
- 인명 피해 : 최대 50만원

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41호, 2011.4.4시행)의 개정 내용 중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고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함

- 피해보상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함(현행조례 제8조, 제12조)
-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함
(현행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별지서식에 근거 조례명 및 용어 순화, 구비서류 등 수정함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민법」 제779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1호)
-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확보

- 농작물피해 보상예산 : 49백만원
- 인명피해 보상예산 : 6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1. 8. 1 ~ 8. 21) : 특기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포유류, 야생조수, 독사류 등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란 농업인이 직접 재배·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4. “인명피해”란 농업인이 군 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5. “피해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일 기준 군 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농작물피해 보상

제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70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작물의 피해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업인에게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급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피해보상액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작물별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범위 초과, 중복지원 등으로 피해보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은 농작물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농작물피해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농작물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피해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농업인에게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보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70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영세농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인명피해 보상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입회하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직접 피해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이 사망하였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일간)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읍·면장 귀하</p>				
구비서류 1. 토지대장, 지적도면 1부 2. 임대차 계약서 등 권리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피해사실 입증 사진 1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지목 : , 지적 m ²)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기 타															
<p>「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0%;">조사공무원</td> <td style="width: 10%;">직</td> <td style="width: 20%;">성명</td> <td style="width: 30%;">(서명 또는 인)</td> </tr> <tr> <td>피해 농업인</td> <td></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읍·면 공무원</td> <td>직</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p>조사방법</p> <p>1. 피해면적 산정</p> <p>가. 과수분야 : 표준재식면적(m²) × 피해주수</p> <p>나. 과수제외한 전 작물 : 가로 × 세로</p> <p>2. 현장사진 첨부</p>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현황	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m^2	피해면적	m^2
보 상 금 액		₩		
<p>「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margin-top: 20px;">거 창 군 수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귀하</p>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			
청 구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	
계 좌 번 호			
<p>「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인)</p> <p>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신고서			
신고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 해 발 생 상 황	피해지역	거창군	읍(면) 리 번지
	피해발생 일 시		
	가해야생 동 물		
	피해내용 (발생경위)		
	피해신고 금 액	계	내 용
	원	○치료비 : ○ ○	
<p>「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1부			수수료
			없 음

